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나61802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나6180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가단122013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항소인 A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 종결 2017. 3. 29.

판결 선고 2017. 4. 26.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가단12201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건물의 대지를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성지호

판사한윤옥

판사윤이진

별지